

1. 개정이유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(공무원노조법),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(교원노조법) 개정('22. 6.10.)으로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신설됨('23.12.11. 시행 예정)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국가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과 관련한 근무상황 등 처리 방식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에 대한 근무상황 처리 방식 정비(안 제8조 제3항 신설)
-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시 사전에 근무상황부등에 의하여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근무상황 처리 방식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 또는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공무원이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제8조(근무상황의 관리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8조(근무상황의 관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 또는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공무원이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③·④ (생략)	④·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